

제10조제1항, 제12조제1항, 제2항, 제13조, 제14조, 제15조)

- (1) 국립검역소장의 수입식품 검사업무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이관됨에 따른 국립검역소장의 권한 삭제
- (2) 근거법령 조항 수정 및 문장 중 용어 정비

나. 무작위표본검사에 적용할 중점검사항목을 유해물질 중심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규정 정비(제8조제1항, 별표 1, 별표 3)

- (1) 수입식품등 무작위표본검사에 적용할 별표 1의 중점검사항목 및 별표 3의 무작위표본검사 대상농약을 삭제하고,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별도로 정하도록 함.
- (2) 별표 3의 잔류농약 검사항목 중 정밀검사 대상농약을 47종에서 49종으로,

단성분 검사 대상농약을 150종에서 189종으로 조정

다. 「훈령·예규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훈령 제248호)에 따라 고시의 재검토기한을 3년으로 설정(제16조)

라. 쌀에 대한 정밀검사는 무작위검사대상농약항목을 적용(별표3)

마. 검사결과 부적합이력이 없는 식품등 중 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인정하는 농·임·수산물 중 일본산 냉동수조기 삭제(별표4)

※ 자세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(www.kfda.go.kr)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부정·불량식품등의 신고포상금 운영지침 일부개정고시

-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09-65호, 2009. 8. 13 -

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「식품위생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,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법령 변경사항을 반영하고,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 재사용 방지 및 근절의 빠른 정착을 위해 신고포상금 세부 지급기준을 마련·운영하고자 「부정·불량식품등의 신고포상금 운영지침」을 일부개정고시 하였습니다.

□ 주요내용

가. 남은 음식 재사용 행위 신고를 포상금

지급 대상에 추가(별표 제3호 사목(7))

(1) 「식품위생법 시행규칙」 개정으로 영

업자 준수사항에 남은 음식 재사용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신설됨에 따라, 이러한 행위를 신고한 경우를 포상금 지급 대상으로 추가

다. 「훈령·예규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훈령 제248호)에 따라 고시의 재검토 기한을 3년으로 설정 (제6조)

나. 식품위생법 전면 개정에 따른 적용법 규 수정

※ 자세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(www.kfda.go.kr)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『식품의 기준 및 규격』 일부개정고시

-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9-66호, 2009. 8. 13 -

식품의약품안전청은 초콜릿류의 세균수 규격의 단서조항을 개정하여 다양한 신제품 개발 및 식품산업발전을 도모하고 식품접객업소의 조리판매 식품 등에 대한 기준 및 규격을 개정하여 조리식품의 안전성을 높여 위생취약부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검체의 채취 및 취급방법의 과학적, 합리적 개정을 통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『식품의 기준 및 규격』을 일부개정고시 하였습니다.

□ 주요내용

가. 초콜릿류의 세균수 규격 단서조항 개정 (제5, 3, 5)

- (1) 초콜릿류에 대해 세균수 규격을 두고 있으나, 발효에 의해 생성된 유산균 등이 첨가된 식품에 대한 현실성 있는 기준 필요
- (2) 초콜릿류의 세균수 규격에 대해 발효 제품은 제외하도록 개정
- (3) 제조공정을 감안한 합리적인 규격 마련

나. 식품접객업소의 조리판매 식품 등에 대한 기준 및 규격 개정(제 8)

- (1)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에 대해 조리식품 등에 대한 기준 및 규격을 개정하여 위생취약 부분에 대한 관리가 필요함
- (2) 원료기준, 조리 및 관리기준·규격의 개정
- (3)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의 조리 식품에 대한 안전성 확보

다. 일반검체채취를 위한 검체채취결정표